#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34 발의연월일: 2021. 10. 22.

발 의 자 : 송영길 · 강훈식 · 고용진

김경만 • 김민석 • 김병욱

김병주 · 김상희 · 김수흥

김영진 · 김정호 · 김주영

김진표 · 김홍걸 · 백혜련

변재일 · 서영석 · 소병철

송옥주 • 안민석 • 안호영

양향자 · 오기형 · 오영환

윤영찬 • 윤후덕 • 이광재

이수진॥ • 이용빈 • 이원욱

이장섭 · 이학영 · 이해식

임오경 · 임종성 · 전용기

조승래 • 주철현 • 최인호

최혜영 • 한병도 • 홍기원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의원(45인)

##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 로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되는 주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음.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 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미 의회에서는 반도체・5G를 비롯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대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과 대규모의 투자를 지원하였음.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국내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 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안 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 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 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나.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 망을 예측하여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 다.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 마. 해당 기술의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 핵심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함(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 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국가핵심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정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 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차.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평가·검증·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 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타. 기업·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 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 게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핵심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현저하며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2. "국가핵심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상호이익 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 기본전략의 수립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3. 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5. 전략산업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 에 관한 사항
-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보완하려고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기본전략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전략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전략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전략(이하 "실행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전략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실행전략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전략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 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전략 및 실행전략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전략 및 실행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전략 및 실행전략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전략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간 연대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 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전략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핵심전략기술조 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⑥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기술조정위 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

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 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이하 "사업 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 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 3. 운송 · 보관 · 비축 또는 양도
- 4.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 는 국가・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 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 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 위
-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

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9조제4항에 따른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전략기술 지정과 관련한 기술조정위원 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 ·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 5.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제4항 에 따른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변경 및 해제된 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해제된 국가핵심기술로 본다.
-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승인 등) ①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 2. 제4항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등에 대한 전략기술의 수출중 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 ·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하는 경우에 조건을 달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 ·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 2.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 · 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⑧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 2. 제7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등에 대한 해외인수·합병등의 중 지·금지·원상회복 등 심의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분야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 ① 그 밖에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1. 보호구역의 설정 ·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을 지정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기간
  -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지정할 수 있다.

-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을 지정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문인

력의 해외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⑥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 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 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여 있거나, 이전 또 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 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 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 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3.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5.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8. 특화단지 입주기업 · 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체·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인·허가등의 의제 신속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 가·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협의
- 5.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등의 허가, 신고
- 6.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업

-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허가등 의제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 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 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 2. 그 밖의 특화단지 운영,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수 있다.
- ⑤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 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 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사 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

우에 한정한다) 및 특화단지 조성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6.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
  ・사용료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기업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설의 위험도, 적합여부 통보
  - 2. 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업활동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개발·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 3. 전략기술과 관련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처리
- 4. 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증설·이전에 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 전보고서 심사
-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 생산 등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제24조(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이라 한다)의 혁신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6.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제25조(국가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적 조사·분석
  -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 4. 「만・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만・군기술협력사업
  -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 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 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2. 국공립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④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39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최 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및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 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

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 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 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투자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출자금
  - 2. 제1호 외의 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3. 그 밖의 부대수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관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33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정부 및 지자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

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전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34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2. 제1호의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전문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 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인력양성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지원

- 3.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인력양성 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 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 제3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전략 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 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 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계약에 따른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국가핵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37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 련기관
  -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 2.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 · 훈련
-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 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제38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기관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대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연대협력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 간 연대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 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신청받아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 2. 기업 간 협력내용
- 3.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1. 공동기술개발
  -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 6. 신뢰성 보증
  -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 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등

- 제4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 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 2. 제13조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 복
-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6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9조의 인허가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 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4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8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②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5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반시설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이 경우 지원 비용은 법 시행일 이후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